

산학협력단 외부연구비 정산 매뉴얼 신규대조표

순번	페이지	개정(전)	개정(후)
1	1	-	- 목차 추가
2	6	- 참여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 합계는 10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음.	- 참여 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10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민간지원사업 및 용역 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음. -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은 필히 10% 이상이어야함.
3	51	회의비 - 내부결재 - 연구비지급신청서(연구관리시스템 자동 생성) - 회의록(연구관리시스템 자동 생성) - 카드영수증 ※ 23시 이후 및 주말 사용 불가 ※ 영수증에 주류 포함 시 불인정	회의비 - 내부결재 - 연구비지급신청서(연구관리시스템 자동 생성) - 회의록(연구관리시스템 자동 생성) - 카드영수증 - 회의신청서(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사업의 경우 필수) ※ 23시 이후 및 주말 사용 불가 ※ 영수증에 주류 포함 시 불인정
4	52	-	- 인건비 증빙 서류 추가 인건비 - 인건비 지불청구서